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권한

① 응급조치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인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긴급전화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한국에서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가. 권리옹호체계의 법적 성격

미국의 P&A 기관은 법률에 따라 주지사가 지정합니다. P&A 기관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단체는 P&A 프로그램을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나

몇몇 P&A 기관들은 주정부의 일부이고, 소수는 준공공기관이며, 소수의 P&A 기관들은 민간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안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 행정기관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서 영미법계의 반관반민기구가 생소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들은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이거나, 민간단체로 명확히 나누어지고,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권리옹호는 그 특성상 장애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방 단위로 조직되어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아가 민간기관의 헌신성과 역동성, 서비스마인드, 전문성과 활동경험이 권리옹호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P&A 기관은 '민간조직'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 마인드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반관반민기구의 성격을 갖는 권리옹호체계야말로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도 민간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관반민의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통해 민간의 비영리단체가 아동이나 노인의 권리옹호기관으로 훌륭히 활동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구성

장애인권리옹호체계는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선례처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P&A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지방 P&A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 P&A는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시군구 단위로 조직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시도 단위로 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 경기도와 같은 큰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P&A를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 장애여성과 같은 특별한 영역에 관해서 특별하게 활동하는 전문P&A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P&A는 실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중앙 P&A와 시도단위의 지방 P&A, 전문 P&A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조직도 준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도 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원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권리옹호체계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 자격요건은 법령에 명시하여 차의 적이거나 불합리한 지정을 피해야 합니다. 중앙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P&A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정은 이동보호전문기관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기간을 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 P&A 기관의 조직과 운영, 재정

P&A 기관은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P&A의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P&A 활동이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만큼 변호사들이 이사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P&A 이사 및 상근직원의 상당수를 변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P&A에 대한 감독, 재정 및 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정권한을 가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맡지만, 아울러 지역사회 및 장애계의 욕구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에 대한 평가를 장애계,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P&A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방기관들의 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미국의 P&A는 지역사회 장애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습니다. P&A 기관의 이사회는 P&A의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그 욕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IMI 프로그램은 기관 자문회의의 60%가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P&A는 인구 및 장애인구를 고려한 비율대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이외에 비영리단체의 재정이나 개별적인 모금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P&A 기관의 권한과 역할

(1) 조사권 및 접근권

P&A 기관들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유기(방임), 또는 권리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P&A는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만 부여하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P&A 기관들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기록 및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⁵⁾

학대와 방임을 조사하려는 P&A 기관들의 시도는 때때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접근권의 보장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조사 이후의 조치 및 사례관리

P&A 기관들은 학대와 방임을 조사한 뒤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당사자를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 여러 수단들을 함께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P&A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소송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공적 보고서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감시와 개선을 위한 공동의 프로토콜을 해당 시설과 함께 개발할 수도 있고, 시설들에게 기술지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자기옹호 훈련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의 인신을 옹호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당사자

5) 미국의 P&A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1)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에서 모든 발달장애인에 대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2) 다음의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모든 기록에 대하여 (요청 3일 내에) 접근할 수 있다.
 - ① 그 개인이 P&A의 클라이언트이고 그 개인(또는 후견인)이 그러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
 - ② P&A가 개인의 치료에 관하여 불만을 접수한 경우, 또는 감시활동의 결과 "그러한 개인이 학대나 방임을 받아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태 때문에 그 개인이 접근을 허용할 수 없으며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주(州)이거나 주가 아닌 후견인이 도우라는 P&A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 (3) 사망의 경우 또는 P&A가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이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면 모든 기록에 또 다른 관계인으로부터의 동의 없이도 (요청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러한 응급 조치권한을 가지고 3일을 초과하는 격리조치를 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권한을 P&A에게 줄 것인지는 고민할 대목입니다. 법원에 응급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하여 그 힘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긴급전화

피해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도 필요합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져 있는 긴급전화를 하나로 모아 112, 119처럼 국민들에게 통일된 인권침해 긴급전화를 각인시키고, 전문 콜센터를 중앙에 설치하여 각각의 보호기관, P&A와 연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대리 및 원고격

P&A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정적, 기타 적절한 구제방법을 수행하도록 위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P&A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P&A는 이러한 소송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이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제도화되어 있고, 행정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미국적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A의 원고격은 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는 점, 장애인들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후견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때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체가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이 도입되었습니다. 6) 이런 선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신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6) 소비자보호법의 단체소송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

위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P&A 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각종 서비스

고용, 의료, 교통, 주거, 기타 서비스들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미국 P&A의 큰 장점입니다. P&A 기관들은 정보제공 및 의뢰, 서비스 공급자, 주 의회의원, 기타 정책입안자 등에게 기술지원의 제공, 자기 옹호 훈련의 실시, 대중의 인식의 제고 등과 같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른 폭넓은 노력에 관여합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인권기관이 서비스기관이라기보다는 관료조직으로 되어 있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담과 각종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관반민기구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구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비스라는 관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 각지에 P&A 기관을 세워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의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2부



토

문

부록 1.

김동호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토론 2.

김윤태
(교수,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토론 3.

김희선

(센터장, 장애인인권센터예방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 록 4.

송정문

(센터장, 1577-13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P&A프로그램도입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제언

김성주

(공동대표, 한국정신장애인인권연대 : KAMI)

I. 들어가는 말

1995년에 정부발의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법 시행 후 놀라운 속도로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정신장애인의 수가 증가했다. 즉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됐는데, 그 직전인 1996년에 전체 수용자수 3만8000여 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7만 6000여명으로 오히려 2배나 증가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법은 탈원화를 이념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라는 지극히 인도적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위험한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일반에 방의 목적하에 합법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 감금하는 법적장치로 기능했다.

200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총 입원환자 7만 2214명중에 자의입원률은 고작 13.8%에 그치고 있다. 2000년에 5.8%인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괄목할 성장이라 하겠다. 이도 국가인권위의 활약상이 아닐까싶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자의입원률이 9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된다.

그간 현행 정신보건법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이뤄져 있다고 하지만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 복귀, 재활모델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공리주의와 온정주의라는 시대착오적 발상하에 격리와 수용이라는 야만적, 반인권적 사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속된 말로

" 너 아픈 것 같은 데 병원에 들어가서 약 잘먹고 암전히 있어 때되면 빼내줄게"
" 밥주고 재워주고 약도 주는 데 잠시 쉬다와"

때문에 인신이 구속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임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의사의 진단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장기강제구금이 가능했던 것이다. 범죄피의자에게도 보장되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조차 격리조치된 것이다. 헌법을 격리조치한 것이다. 이쯤되면 정신보건법이 정신줄을 놓은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최소 제한의 원칙을 가볍게 제껴버리는 센스.....

그랬다. 우리 정신장애우는 불법적인 부당 불요한 장기강제구금을 감내해야했다.

그 때 2001년 11월 터널너머 한줄기 빛이 나타났으니 국가인권위원회다. 병원에 진정함이 설치되고 정신장애우들의 싸우팅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간의 담지물로 정신장애인 인권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가 2009년 11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II. P&A 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인권일반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P&A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며 늦은 감이 있다.

1. 정신장애인을 위한 P&A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

xii 절차적, 제도적 권리 보장

- 권리의 선언이나 명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그것이 구체화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짐

xii 사후적 구제보다 사전적 예방

xii 권리의 명시뿐만 아니라 구체절차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

(ex. 병동내에 권리목록과 구체절차에 대한 홍보매뉴얼과 함께 관련서식 비치할 의무화)

xii 클라이언트의 불이익 및 보복피해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

xii 부당, 불요한 인신구속 근절(개방병동화)

- 모든 인권침해의 근원을 없애는 것임(신체란 인권침해가 가장 극한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저절러지는 곳이다)
- 적법절차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정
-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 개선(사실상 피수용자가 직접청구해야 함, 비용부담의 문제, 최후의 구제수단)
- 「강제입원=폐쇄병동입원=장기입원」이라는 전형적인 등식 타파

xii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임파워먼트)

- 보호와 옹호의 수동적 객체로 전락할 우려(편견과 낙인을 강화)

xii P&A 프로그램에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 보장

III. (가칭)정신장애인 인권옹호 센터 설립에 대한 제언

xii 정신보건법에 법적 근거 명시

-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처우개선요구에 대한 조항 신설
- 시도지사에게 정신장애인 보건시설에 수용 또는 이용중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리 옹호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 시도지사가 정신장애인 인권옹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xii 법적성격 및 구성

- 판 vs 민간위탁(책임소재의 문제, 내공이 없으면 외주업체로 전락)
- 변호사 1명, 2-3명의 인권옹호관, 자문위원 or 운영위원(당사자, 가족)
- 국가인권위 및 인권위분사무소와 연계

xii 권한

- 예고 없는 방문 조사권, 진정에 대한 조사권, 당사자의 동의 아래 관련 기록 열람 및 복사권, 행정부 감사결과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열람 및 복사, 원고 대리하여 소송제기
- 원고적격의 문제(단체소송)

IV. 마치면서

의료적, 사회복귀적 모델에 기초한 현행 정신보건법을
사회통합적,인권복지적 모델로 대수술

미리건 우리가 아니라 이런 정신보건법을 우리를 배제한 채 만드는 그대들이라구요^^

발달장애 부모가 바라보는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박문희

(센터장,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센터)

I. 들어가며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도움 받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장애인들은 학대, 무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권리 침해, 인권침해, 등을 당해도 어디 한 군데 마음 놓고 도움 받을 때가 별로 없다. 이런 맥락에서 P&A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발달장애 대한 기사 살펴보기

먼저 최근 발달장애에 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1)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 안 돼"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이라고 전했다.

또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지원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발달장애인 관련 권익 옹호 단체와 함께 소득보장, 고용, 거주, 후견제도, 돌봄, 인권보호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칭)발달장애인지원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발달장애인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부모,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제정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법안 성안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더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2) 비인가 시설에서의 개만도 못했던 지적장애인 인권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미신고 생활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미신고 생활시설인 'c의 집'에서 생활인들에게 '강박' 및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활인 34명을 지난 7월 23일 긴급 분리 조치시켰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자 '민간인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랑이 과정에서 끈으로 강박된 이를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자 시설장은 '자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으며, 조사단이 나갈 때까지도 계속 묶어놓은 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시설장 김모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설장

은 강박당사자인 김 모(지적장애 1급)씨를 옆에 앉혀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애는 (서울 강남구)세곡동에서 비닐하우스로 시작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아이다. 자폐성 장애가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온 몸을 자해하기 때문에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양팔에는 깃무른 자국과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상처가 원장의 주장대로 자해로 인한 상처인지, 오랫동안 묶어놓고 있어서 생긴 상처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원장은 “애 말고도 묶어놓은 애가 있는데, 둘 다 자폐다. 애(김 모씨)는 폐고, 부수는 성향이 있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시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감당 못한다고 해서 데려왔다. (병원에서) 삐쩍 말라서 돌아온 모습을 보니 자식 같은 마음에 안스러워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데리고 있게 됐다. 처음에는 끈으로 묶어놨는데, 살이 파이고 해서 이걸(팔을 묶어놓을 수 있는 보조기구) 구입했다.”며 김씨를 결박할 때 쓰는 도구를 보여줬다.

강박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까지

하지만 다음날 김씨의 모습은 시설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확인했더니 “김씨의 자해행위가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23일)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위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3)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를 보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족 내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끔 있다’가 7.4%, ‘자주 있다’가 2.3%로 가족 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7%로 2005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와 간질장애의 가족 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울

이 가장 높았고, 가족 내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내부 장애유형이 가장 높았다.

가족 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경우, 그 폭력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받는 가족 내 폭력의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폭력(30.5%)’, ‘방임·유기(15.3%)’, ‘신체적 폭력(9.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가족 내 차별유형 중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57.3%)와 지적장애(55.0%)였고, ‘정신적 폭력’은 안면장애(45.0%)가, ‘신체적 폭력’은 지적장애(16.6%)가, ‘방임 및 유기’는 정신장애(35.5%)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가족이 주로 누구인지를 물어본 결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25.8%)’, ‘형제·자매(21.7%)’의 순이었다. 그 외 ‘자녀’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9.4%나 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61.3%)와 안면장애(55.2%)가 ‘배우자’에 의해 차별·폭력을, 지적장애(52.9%)는 ‘부모’에 의한 차별·폭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 외 자폐성장애(44.6%)는 ‘형제·자매’에 의한 차별·폭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의 폭력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 6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필요(23.5%)’, ‘보통’(10.1%), ‘매우 불필요’(0.7%), ‘약간 불필요’(0.6%)의 순이었다. 즉, 전체 장애인의 88.6%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폐성장애와 간질장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96.6%, 91.4%로 가장 많았다.

III. 나가며

위에서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지원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내가 가서 본 시설 내에서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들을 묶어 놓고 있고 방임은 기본인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가까

운 가족 내에서 조차도 지적, 자폐성장애인들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이 제일 많이 일어나며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 형제들 순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시설,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으로부터, 시설 안에서 학대받거나, 방임 상태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생각해 보라.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장애인차별 상담전화(1577-1330)도 있고,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권, 접근권, 시정권고, 등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부족과 보수성으로 인해 사건에 대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도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조사권, 발동을 할 수 없음과 소송권의 부재로 인해 한계점이 있다.

발달장애인이 어떤 형태든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한다. 접근성이 좋으려면 소규모로 만들어 지역화 해야 하고, 자율성과 역동성을 갖춰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나 노인학대예방센터처럼 국가기관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조사권 및 소송권을 부여한 P&A시스템 운영하고, 긴급구조처럼 피난처 역할의 서비스 지원까지 할 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지 옹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시설장애인 P&A 제도에 대한 충북 상황

권은숙

(소장,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맑은 고을 충북에선 어떤 일인지 장애와 관련한 험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2007년 8월 옥천의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부활원'에서 생활인이 생활지도사(시설운영자의 사위이자 사무국장의 남편)에게 태고프다고 달려들었다가 목졸려 죽음을 당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옥천 부활원 장애인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서울의 시설인권연대와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다.

현재 생활지도사는 1심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고등법원에서는 항소기각으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버젓이 부활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 중이다.

대책위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다른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록원, 영생원, 부활원, 꽃동네 4개의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요청해 생활인116명을 대상으로 폭력, 인권침해, 운영상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시설경험이 있는 당사자,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등이 참여한 실태조사 보고회 자리에서 지속적인 시설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p&a제도를 요구했었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또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2009년 충북도와 장애인관련 정책협의 과정에 서 요구한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권실태조사도 진행되었는데, 전체 21개 시설 중 8개 시설, 336명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실시했다.

2009년 12월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인들을 위한 p&a제도를 요구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다.

두 차례의 실태조사와 보고회를 통해 충북도의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담당하는 보건위생과와 장애인생활시설 담당인 장애인복지과는 p&a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충북도장애인생활시설협회의 대표조차 '관을 빼고 우리끼리 p&a하자'할 지경이다.

충북장차연의 고민은 다들 하자고 덤비는 p&a를 어떻게 잘,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1차 회의에 참가한 후 장차연 집행위원회의에서는 p&a 이름의 별도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충북장차연의 자립생활센터들이 시설생활인의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충북도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면 되지 않겠는가로 압축되었다. 다만 조사권이 없는 한계와, 지역에 인권변호사가 전무한 상황은 고민으로 남았다.

충북에도 각 영역의 장애인권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변호사와 조사권만 없지 p&a와 활동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사무소를 대폭 확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리하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국가인권위의 면도 서고 조사권이 없는 우리의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 외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전국에 장애인자립센터가 위탁 지정되면서 생겼던 당사자단체 간의 알력을 깊이 체험한 까닭이기도 하다.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 충북도와 협의가 있는 내일, 토론회가 있는 모레,

내일 충북도를 만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 고민스럽다. 국회 토론회가 먼저 었더라면 조금더 정리되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시설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조례라도 우선 만들자고 하는 것이 좋을까.. 복잡하다.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 검토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1. Protection and Advocacy 역사

Protection and Advocacy 개념은 처음에 일련의 지방 텔레비전 뉴스 방송(Geraldo Rivera가 진행하는 뉴욕시 ABC 뉴스방송)에서 착안되었다. 그 방송에서는 Staten Island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Willowbrook에서의 학대와 방임, 프로그램의 부족에 대해 폭로하였다. 이 방송으로 인해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던 Jacob Javits는 1975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법령을 개정하여 P&A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P&A 시스템은 원래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법령에서 그 권한은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The 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NDRN)) - 처음에는 P&A 시스템 전국연합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s (NAPAS)는 198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984년 NAPAS는 Client Assistance Program (CAP)을 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CAP는 주 직업재활기관을 찾는 의뢰인들에 대한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모든 주에서 입법화되었고, 절반 이상의 주 지정 P&A 기관에서 C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윌로우브룩 장애인시설의 실상을 폭로한 영상 Willowbrook: the Last Great Disgrace - preview http://www.youtube.com/watch?v=k_sYn8DnlH4

같은 해에 의회는 다시 발달장애인 법령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시설보호로 생기는 문제에 개입하는 P&A 기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86년 의회는 P&A 기관이 정신질환자들에게도 권리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10년 동안에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옹호를 위한 연방의 지원은 처음에 정신지체장애인시설에 거주자에 한정되었다가 정신질환자와 직업재활 의뢰인을 위한 권리옹호 서비스에까지 확대되었다. 많은 주에서 이렇게 연방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장애 유형과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주 정부 및 민간 지원이 확대되었다. 10년 동안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는 P&A 기관들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국에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P&A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매년 열리는 전국 P&A 기관 회의는 그 네트워크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회의에서 P&A 기관 담당자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와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공유하였다.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위임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재원을 확대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재활법이 1993년 개정되어 개인의 권리를 위한 P&A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는 1990년부터 DD, MI, CAP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이러한 옹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3년 후인 1993년 재활법이 개정되어 이전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모델로 하여 개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새로운 기금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1993년에 의회는 보조공학법(the Assistive Technology (AT) Act of 1988)을 개정하여 주 단위로 5년 이상 진행되어온 보조공학 프로젝트를 입법화하였다. 전국장애인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는 보조공학 문제에 관해 장애인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법률적 권리옹호서비스를 제공하는 AT 프로젝트를 각 P&A 기관들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는 장애인단체들은 노동인권 및 노동유인증진법(the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 (TWWIA)) 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법은 사회보장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P&A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0년 아동보건법(the Children's Health Act of 2000)에는 P&A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2가

지 규정이 포함되었다. 하나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도 PAIMI(정신질환자를 위한 P&A)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가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people with traumatic brain injury - TBI)들을 위한 새로운 P&A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최근 2002년에는 의회에서 미국투표지원법(the 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제정하면서 투표 접근을 위한 P&A(the Protection & Advocacy for Voting Access - PAVA)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투표등록, 투표소 접근 및 투표 등의 투표 과정에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P&A 시스템에 부여하였다. PAVA는 P&A 기관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장애인들에게 투표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P&A 시스템

미국의 P&A 시스템은 그동안 인권침해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의회에서 1975년 설립된 P&A 시스템은 지금까지 많은 성취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많은 할 일이 남아있다.

P&A 시스템은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가장 규모가 큰 전국적 단체이다. P&A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권한을 가진다.

- ① 의심되는 학대와 방임을 조사하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법절차를 진행한다.
- ② 학대와 방임, 거주지에 대한 처우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조사를 위해 필요로 한 기록과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③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 주법에 근거한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④ 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관한 정보, 그 외의 법률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을 안내한다.
- ⑤ 장애인과 관련된 입법 및 서비스에 관한 개혁에 관해 정책입안자들을 교육한다.

모든 P&A 기관들은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그의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을 감시하고, 조사하며 부당한 조건이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많은 일은 상당한 자원을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확보 프로그램, 건강보험, 접근가능한 주거권, 생산적인 고용기회에 관한 충분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또한 학대와 방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 부여한 법적 권한

P&A 시스템은 특정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권한 및 예산지원을 규정된 몇 개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지원은 이들 프로그램마다 다양하고, 이는 서비스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P&A 시스템과 관련하여 의회는 각 프로그램마다 매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각 주마다 다양한 장애인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199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대략 210만명의 장애인이 다양한 종류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 1999년에 P&A 기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다른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은 수천여건) 거의 1만7천건의 학대 및 방임 사건을 조사했다. 그들은 대부분 이들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P&A 시스템은 이들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주 정부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해 있고, 독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른 감시 시스템과 기관들은 필요한 감독기구와 돌봄 기능 개선 권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주 정부가 공립·사립기관에 대해 허가나 감독이 부족하였고, 시설 허가권을 주기 전에 시설방문이나 운영기준을 부과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으로 인해 많은 시설 거주자들이 사인이 분명치 않은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인가받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가시스템은 요양시설 내에서의 포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학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거나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종종 불충분한 주 정부 시스템의 감독기능을 의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P&A 기관에게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에서는 시설들에 대해 P&A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이러한 권한에는 넓은 자유재량을 가지고 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독립적으로 기록과 시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P&A 기관이 특히 사망사건에 대응은 주정부나 연방 차원에서 불확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보고의무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또한 대부분의 P&A 기관에서 자원의 부족, 주정부기관이나 사적 기관으로부터의 협력의 부족에 기인하기도 한다.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권익옹호 기관인 P&A

P&A 기관들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격리와 강박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P&A 기관들이 이 분야에서 노력하였던 사례들이다.

20년 이상 뉴욕의 P&A 기관은 특별한 주정부 조사권한과 예산으로 격리와 강박사건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있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기관은 5천건이 넘는 사망사건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수백건 권고 및 광범위한 시설개혁을 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강박을 하는 동안 강제로 환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게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하면 쉽게 질식할 위험이 있었다. P&A 기관들의 노력으로 그러한 관행은 뉴욕 주 전역에서 금지되었다. 시정권고를 한 결과, 격리와 강박 건수 및 그와 관련된 사망 사건이 크게 감소하였고 응급의료도 향상되었으며, 이는 자살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P&A 기관은 최근에 격리 및 강박과 관련 있는 최소 11건의 사망사건을 조사하여 광범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3개의 공적 보고서를 냈다. 개선내용에는 강박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감시, 의료적으로 적절치 않은 격리나 강박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문제점의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에서는 었드린 상태에서의 강박의 위험성을 강조하였고, 환자의 비민이나 항정신약품 처방의 관리 등의 다른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에서는 이들 사망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였고, 질식이나 급작스런 사망의 위험상태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데에 있어 의료진을 지원하는 정책과 절차를 대해 강조하였다.

1989년에 일리노이 주 P&A 기관은 그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격리의 한 형태로 작은 상자에 갇혀있던 환자에 대한 특별교육 사건을 발표하였다. 그 기관은 그러한 관행을 금지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미네소타 주 P&A 기관에서는 행동을 순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급속상자에 아이를 가둔 사건을 발표하였다. 기관에서는 학교로 하여금 그 관행을 금지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1999년에 일리노이 주 전역의 학교에서 6살 정도 밖에 안되는 학생들을 가두는 사건이 알려졌다. 학교에서는 위협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한번에 몇시간 동안 학생들을 작은 방에 가두고 있었다. 일리노이 주 P&A 기관은 그러한 관행의 위협성에 대해 주 의회 의원들을 교육시켰고, 1999년에 일리노이 주 학교에서 격리와 강박의 사용을 제한하는 주법이 통과되었다.

다른 P&A 기관에서는 더 터무니 없고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의 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예를 들어 캔자스 주 P&A 기관은

1999년 10월 주 병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강박으로 한 젊은 환자 알렌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인정을 벌이다가 6명의 스텝들에 의해 었드린 자세로 몇분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그중 한명의 스텝이 1-2분간 숨을 못 쉬도록 목을 조였고, 다른 두명의 스텝은 몸으로 눌러 알렌을 그의 등뒤로 팔을 감게 한 다음 바닥에 배를 대도록 하였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세명의 스텝은 그의 양쪽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알렌은 강박을 당하는 동안 숨을 쉴 수 없었고, 경련을 일으키다가 다시는 의식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P&A 기관은 주 병원에 알렌의 사망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속적으로 스텝들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리노이 주 조사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는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시스템은 안전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일이다.”

P&A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P&A 시스템 및 강박과 관련된 학대에 있어서의 역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기록 및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에 관하여 보건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각 주 P&A 기관들은 수요자의 욕구가 다르고 재원문제로 인해 P&A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있다. 각 P&A 기관들의 활동과 서비스는 매년 정신보건 당사자나 가족 및 이전의 정신보건서비스 수혜자, 변호사, 정신보건종사자, 정신보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AIMI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3. P&A 프로그램별 근거법과 집행기관

번호	프로그램	근거법	집행기관
1	PADD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42 U.S.C. §15041 - §15045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1975, as amended Last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200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
2	CAP (Client	29 U.S.C. 732 VOCATIONAL	U.S. Department of Education (DOE)

	Assistance Program)	REHABILITATION AND OTHER REHABILITATION SERVICES ACT 34 CFR § 370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SER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
3	PAIMI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42 U.S.C. § 10801-10807, 10821-10827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Act-1986, as amended (Last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Children's Health Act of 200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CMHS)
4	PAIR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Rights)	29 USC §794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OTHER REHABILITATION SERVICES ACT	U.S. Department of Education (DOE)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SER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
5	PAAT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in Need of] Assistive Technology)	29 U.S.C. § 3001 (Public Law 105-394, November 13, 1998) ASSISTIVE TECHNOLOG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U.S. Department of Education (DOE)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SER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
6	PABSS (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42 USC §1320b-21, P.L. 106-170 SOCIAL SECURITY ACT First Authorization: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of 199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isability and Income Security Programs (DISP)
7	PATBI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42 USC §300d-53, P.L. 106-310 PUBLIC HEALTH SERVICE ACT First Authorization: Children's Health Act of 200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8	PAVA (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er Access)	42 USC §15461-62, P.L. 107-252 ELECTION ADMINISTRATION IMPROVEMENT ACT First Authorization: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
---	--	--	---

4. P&A 프로그램의 내용

1) PADD(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

PADD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의 2010년 회계연도의 적정 권고예산은 4,600만\$이다.

PADD 서비스 대상자:

PADD 서비스 대상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DD)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에서 정의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아래와 같은 심각하고 장기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① 22세 전에 발달장애가 명백한 사람
- ② 발달장애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결과 다음의 주요 생활 활동에서 3가지 이상 실질적인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
(자기돌봄, 듣기와 말하기, 학습, 이동성, 혼자 다니기, 독립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 ③ 평생 혹은 오랜 기간 다양하고 개인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 ④ 또는 출생시부터 9세까지 실질적인 발달지연, 또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위 3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PADD 시스템의 권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42 U.S.C § 15043)에 의하여 연방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P&A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해당 주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및 옹호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그리고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한
- ②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을 안내할 권한
- ③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방임 사건이 기관에 보고되거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 ④ 다음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 이 경우 기관에 접수된 진정은 모니터 결과 해당 장애인이 학대나 방임에 처해 있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i) 기관의 의뢰인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법률상 후견인, 보호자 또는 그 외에 기관에 접근권을 부여한 다른 법률상 대리인이 의뢰한 경우도 포함)
 - ii) 정신상, 신체상 조건을 이유로 기관에 그러한 접근권을 부여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 iii) 법률상 후견인, 보호자, 그 외 다른 법률상 대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주 정부인 발달장애인
- ⑤ 기관이 문서로 관련 기록에 대한 요구를 한 이후 3일 이내에 조사와 관련 있는 발달장애인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 ⑥ 다음의 경우에 기관이 문서로 그러한 요구를 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다른 제3자의 동의 없이 즉시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 i) 기관이 해당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위협에 처해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ii) 발달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 ⑦ 정책입안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

PADD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42 U.S.C. § 15001, Public Law 106-402,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1975, as amended Last amendment and reauthorized: 2000)에 근거한다. 또한 PADD는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HHS),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이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발달장애국) - www.acf.hhs.gov
President's Committee on Intellectual Disabilities(대통령 산하 지적장애인위원회)
- www.acf.hhs.gov/programs/pcpid/

2) CAP(Client Assistance Program)
- 의뢰인 지원 프로그램

의회는 1984년 재활법을 개정하여 CAP를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에 권한을 부여하고 기금을 지원하였다. CAP는 재활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을 찾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의 2010년 회계연도의 적정 권고예산은 1,600만\$이다.

현재 시행되는 재활법 규정(29 U.S.C. 732 Sec.112, PL 105-220)에 따라 CAP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이 있다.

- ① 재활법상의 이용가능한 혜택을 받으려는 의뢰인과 지원자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재활법상 제공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권리 옹호 (재활법상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상, 행정상, 또는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취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지원 및 권리옹호 포함)
- ③ 재활법 및 미국장애인법의 고용 관련조항(42 U.S.C. 12111 et seq)에 따른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혜택에 관한 정보 제공
- ④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과 직접 관련 있는 서비스에 관한 지원 및 권익 옹호

CAP 대상자: CAP의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따라 달라진다.

- ① 재활법상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신청자는 이용가능한 모든 CA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② 미국장애인법의 Title I(고용)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은 그 문제가 또한 재활법상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서비스와 관련 있는 경우에 이용가능한 모든 CA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③ 재활법상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신청자가 아닌 장애인은 미국장애인법의 Title I(고용) 조항, 재활법상 이용가능한 권리나 혜택과 관련된 CAP 서비스 정보만 받을 수 있다.

④ 그 이외에 주에 있는 다른 모든 장애인들은 CAP에 관한 정보만 받을 수 있다.

Client Assistance Program은 다음과 같은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① 재활법 및 미국장애인법 Title I (고용) 규정상 이용가능한 모든 서비스의 신청자 및 수혜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일
- ② 서비스 신청자 및 수혜자에게 재활법상 기금지원이 되는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 주는 일
- ③ 재활법상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 신청자 및 수혜자들의 질문이나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일
- ④ 서비스 신청자 및 수혜자가 재활 상담가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일
- ⑤ 서비스 신청자 및 수혜자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상담가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일
- ⑥ 서비스 신청자 및 수혜자가 재활법상 받을 자격이 있는 처우나, 서비스 또는 재활을 받지 못하였을 때 행정상, 법률상 또는 다른 적절한 절차를 대리하는 일
- ⑦ 서비스 신청자 및 수혜자에게 P&A 기관과 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연결해주는 일

CAP는 다음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 VR)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자격이 되는지 아직 최종 결정을 받지 못한 서비스 신청자
- ② 독립생활(IL) 프로그램 신청자나 의뢰인 - IL 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받고 있는 장애
- ③ 직업재활 외 다른 특별 프로젝트의 신청자나 의뢰인 - 재활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받고 있는 장애인
- ④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결정된 의뢰인
- ⑤ 재활법 및 미국장애인법 Title I (고용) 규정상의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장애인
- ⑥ 직업재활 외 다른 시설 이용 신청자나 의뢰인 -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관계를 맺고 있으나, 위의 5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

CAP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의뢰인과 스텝 간의 분쟁
- ② 문제와 관련된 소통

- ③ 원하는 정보
- ④ 재활법과 관련 없는 문제
- ⑤ 자격 및 신청 문제
- ⑥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CAP는 직업재활과정에 있는 장애인을 어느 시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서비스 신청에 관심이 있을 때
- ② 신청 과정에 있을 때
- ③ 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
- ④ 서비스 받는 것이 종료되었을 때
- ⑤ 일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질문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재활법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찾거나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① 직업재활서비스를 신청할 권리 - 이는 평가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 ②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신조, 종교, 출신국가나 장애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③ 자신의 재활 프로그램 계획에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의 변경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④ 비밀에 관한 권리 - 직업재활상담가에 의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그 신청자나 의뢰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 ⑤ 직업재활 상담가에 의한 결정에 대해 불복할 권리
- ⑥ CAP(Client Assistance Program)으로부터 지원이나 권익옹호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⑦

CAP는 재활법(29 USC §732, P.L. 105-220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Last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CAP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 DOE) 산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부서(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 OSERS)와 재활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 RSA)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재활서비스국)

-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sers/rsa/index.html>

3) PAIM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

1986년 의회는 성인 정신질환자들과 심각한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학대와 상해에 취약하고, 처우·영양·의복·돌봄·퇴원계획 등에 있어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우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 개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주 정부 감시 시스템은 변화가 많았고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는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법(the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 PAIMI Act)을 통과시켰다. 발달장애인법(DDA)상 각 주에서 지정된 P&A 시스템은 또한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PAIMI) 프로그램도 관리하였다.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의 2010년 회계연도의 적정 권고예산은 4,200만\$이다.

1986년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PAIMI)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발달장애인법(DDA)의 보호를 확대시켰다. 의회는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서비스국(SAMHSA)에 각 주의 P&A 기관들이 PAIMI 프로그램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하였다. 민간 비영리기관이 45개의 P&A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P&A는 주정부의 정신보건처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PAIMI) 기금은 미국헌법 및 연방법, 주 법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 P&A 기관들이 시설에서 벌어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학대·방임사건 조사, 법률서비스(개인 및 집단소송), 입법활동 또는 학대·방임 등을 시정하는 다른 적절한 조치, 행정처리 등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주의 P&A 시스템에 지원되는 PAIMI 프로그램 기금은 정신보건시스템 전반을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신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른 연방 기관, 주 기관, 전국정신보건협회 등과 같은 민간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PAIMI)법에 근거하여 의회는 각 주의 P&A 기관에 특별한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P&A 기관들은 병원이나 학교, 요양소, 그룹홈, 보호소, 교도소 등의 공립·사립시설에서 행해지는 학대·방임·그밖의 권리위반들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의뢰인과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았다.

각 주의 P&A 기관들은 또한 PAIMI법에 근거하여 부적절한 격리와 강박의 사용과 관련된 학대사건, 방임과 이들 시설에서 벌어진 시민권 위반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립주거시설,

거주자, 거주자 기록, 관련 사망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았다.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PAIMI) 프로그램 대상자:

- ① 주 법에 의해 자격을 받은 정신보건 전문가의 진단결과 심각한 정신장애나 정서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자
- ② 정신질환자의 요양을 위한 공립·사립병원 입원환자 및 주거시설 입소자
- ③ 공립·사립 주거시설에 있을 당시 학대나 방임 또는 권리침해를 당하였거나 그런 위험에 있었던 자

주 P&A 기관은 또한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PAIMI)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① 요양시설로의 이동 또는 입소허가 기간 동안
- ②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한 후 90일 이내
- ③ 요양시설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사망하였거나 그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 ④ 보호소나 교도소에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강제로 감금된 경우

2000년 10월 17일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PAIMI)법이 개정되어 뉴멕시코 주의 인디언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57번째 P&A 기관이 설립되었고, P&A 기관에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심각한 정신질환자와 심각한 정서장애를 가진 자들을 위해 활동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주 P&A 시스템의 서비스 우선권은 지역사회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PAIMI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①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 ② 연방법 및 주 법령상 보장된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다.
- ③ 정신질환자에 대한 학대 및 방임사건이 기관에 보고되었거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 및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주에 있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 ⑤ PAIMI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PAIMI는 정신질환자 보호 및 권익옹호법(42 U.S.C. § 10801, Public Law 106-310, 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Act 1986, as amended Last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Children's Health Act of 2000)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PAIMI는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HHS) 산하의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서비스국(th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 SAMHSA)과 정신보건서비스센터(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 CMHS)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U.S. DHHS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미국 정신보건서비스 센터)

- <http://mentalhealth.samhsa.gov/cmhs/P&A>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NAMI - 전국정신질환자연맹)

- <http://www.nami.org>

Bazelon Center for Mental Health Law(정신보건법 바젤란센터)

- <http://www.bazelon.org>

4) PAIR(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Rights)

- 개인의 권리 보호 및 옹호

PAIR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에서 1993년 재활법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의 2010년 회계연도의 걱정 권고예산은 2,200만\$이다.

PAIR 서비스 대상자:

PAIR은 다음의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 ① 의뢰인 지원프로그램(Client Assistance Program - CAP) 관련 조항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
- ②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 PADD)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장애인들
- ③ 정신질환자 보호 및 옹호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보호 및 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 PAIMI)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장애인들

PAIR은 재활법(29 U.S.C. § 749e, Public Law 106-402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Last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PAIR은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 DOE) 산하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 부서(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 OSERS)와 재활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 RSA)이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재활서비스국)

- www.ed.gov/programs/rsapair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전국장애인협의회)

- www.ncd.gov/

5) PAAT(Protection and Advocacy for Assistive Technology)

- 보조공학에 대한 보호 및 옹호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보조공학 기기나 보조공학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이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AT는 재활법과 특수교육, 메디케이드(Medicaid -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 - 노인·장애인 의료보험), 민간 보험 또는 다른 재원으로 보조공학 기기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PAAT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안내
- ②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받을 행정적, 법률적 혹은 비공식적 구제 등의 권익 옹호

PAAT는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as amended, Sec. 5; Public Law 108-364; 29 U.S.C. 3004.)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PAAT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 DOE) 산하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 부서(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 OSERS)와 재활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 RSA)이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U.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 - 미국재활서비스국)

- <http://www.ed.gov/programs/paat/>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NIDRR - 국립장애재활연구소) -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sers/nidrr/index.html>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RESNA)
- 북미 재활공학 및 보조공학연구소 - www.resna.org

6) PABSS(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 수급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

PABSS는 1999년 노동인환권 및 노동유인증진법(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 - TWWIIA)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권익옹호 프로그램 기금은 사회보장 수급자를 지원하는 권익옹호 및 다른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법상의 수급자들이 이용가능한 보호 및 권익옹호 체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국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 Title I part C(42 U.S.C §15001)에 따라 각 주에 설립된 보호 및 권리옹호(P&A) 기관에 기금을 지원한다.

PABS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정보제공 및 직업재활과 고용서비스를 받는 것에 관한 조언
- ② 장애를 가진 사회보장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취업을 위한 권익옹호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

PABSS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42 USC §1320b-2L, P.L. 106-170, First Authorization: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of 1999)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PABSS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산하의 장애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Disability and Income Security Programs - DISP)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회보장국)
- www.ssa.gov

7) PATB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 외상성 뇌손상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

PATBI는 2002년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PATBI 서비스 대상자: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PATBI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용어는 퇴행성이나 선천성이 아닌 외부에서의 물리적 충격을 받아 인지기능 또는 물리적 기능의 손상, 행동 또는 감정기능의 교란이 생긴 뇌의 손상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정보제공, 관련기관 안내 및 조언
- ②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권익옹호
- ③ 법적 대리
- ④ 자기옹호(Self-Advocacy)에 대한 지원

PATBI는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s Act 42 U.S.C § 300d-53, Public Law 106-310, First Authorization: Children's Health Act of 2000)에 근거하고 있고, 미국 보건 및 인적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HHS) 산하의 공중보건서비스부서(Public Health Services - PHS) 및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 HRSA)이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
- www.hrsa.gov

Brain Injury Association of America(미국뇌손상연합)
- www.biausa.org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Head Injury Administrators (NASHIA-전국뇌손상행정가연합) - www.nashia.org

8) PAVA(Protection and Advocacy for Voter Access)
- 투표 접근성을 위한 보호 및 옹호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투표 등록, 투표, 선거장소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여 선거과정

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PAVA 서비스에 제공된 재원은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장전법 Title I part C(42 U.S.C. §15001)에 따라 각 주에 설립된 보호 및 권리옹호(P&A) 기관에 지원된다. 그러나 이 기금은 투표 접근성과 관련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거나 참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PAVA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을 지원한다. 장애의 개념은 미국 장애인법상의 장애 정의를 이용한다.

- 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생활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 ② 그러한 손상의 기록이 있는 사람
- ③ 그러한 손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사람

PAV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장애인들이 투표 등록, 투표, 선거장소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여 선거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② 투표 기기나 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 ③ 그러한 기기나 시스템 이용을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평가하는 것

PAVA는 선거관리법(Election Administration Improvement Act 42 USC §15461-62, P.L. 107-252 First Authorization: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PAVA는 미국 보건 및 인적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HHS) 산하의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ACF) 및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DD)이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관

Developmental Disabilities(발달장애국)

- <http://www.acf.hhs.gov/programs/add/>

American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Disability Voting Project(미국장애인연합 장애투표프로젝트) - www.aapd-dc.org

5. P&A 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사례

1) Laguna Honda Case(Mark Chambers, et al. v.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⁸⁾

라구나 혼다 병원(Laguna Honda Hospital - LHH) 입소자들이 대형 샌프란시스코 시설에서 분리되어 있다.

2006년 10월 11일 라구나 혼다 병원의 입소자 6명과 샌프란시스코 독립생활센터는 샌프란시스코의 장애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화가 미국장애인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 입소자들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를 바랬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결정되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시의 조치에 의해 불필요하게 라구나 혼다 병원에 입소해 있었다.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시의 조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게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장애인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라구나 혼다 병원을 떠나 충분히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접근가능하고 거주가능한 주거를 요구하였다.

2008년 9월 18일 William H. Alsup 판사는 챔버 외 다수 v. 샌프란시스코 시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최종합의안을 승인하였다. 이 소송은 그 합의안의 목표는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서비스 및 주거제공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소송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가 주 대리인으로 제기하였고, 공동대리인으로 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 (DREDF), AARP Foundation Litigation, the Bazelon Center for Mental Health Law, and the law firm of Howrey LLP (pro-bono)이 선임되었다.

합의안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는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다. 집단소송 원고들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아 라구나 혼다 병원과 같은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합의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샌프란시스코 시는 거주가능하고 접근가능한 지역사회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주거임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시는 5년간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 500명의 집단소송 원고들을 위해 분산된 장소에 접근가능하고 독립적인 주거를 보장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합의안상에 집단소송 원고들의 주거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방안이 포함된다. 시설보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집단소송 원고들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집단소송 원고들이 선호하는 독립주거지원금을 제외한 적당한 주거 선택권 보장, 월세 제공 등의 필요하고 알맞은 설비 변경, 주거 목록 정리

②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 선택권을 제

8)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pai-ca.org/advocacy/lhh/index.htm>

공한다. 캘리포니아 의료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아 라구나 혼다 병원 입소자들에게 비용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1인당 1년에 77,600달러에 달하는 주거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500가지이다.

③ 지역통합 프로그램의 도입: 샌프란시스코는 공중보건 및 노인서비스 부서 내에 합동부서를 만들어 라구나 혼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집단소송 원고들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지역 사회계획을 수립한다. 지역통합 프로그램의 하나의 기능은 라구나 혼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욕구와 선호에 알맞은 보다 통합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주거계획은 집단소송 원고들에 대한 평가와 선호를 기초로 하여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것이다.

④ 샌프란시스코 시는 집단소송 원고들을 위해 사례관리의 적절한 서비스(개인요양, 가사돌봄, 식사, 금전관리, 이동 등)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을 안내할 것이다.

⑤ 샌프란시스코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할 것이다.

⑥ 지정된 집단소송 원고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⑦ 라구나 혼다 병원: 원고들은 샌프란시스코가 780개 요양병상을 라구나 혼다에 다시 만드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그 병상을 만든다면, 라구나 병원시설을 다시 짓는 계획 안에 그 시설은 단기 재활치료를 목표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구나 병원시설을 다시 짓는 것은 집단소송 원고들이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병원에 의료 및 다른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라구나 혼다 병원에 거주하는 집단소송 원고들이 지역사회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거 및 정신보건 서비스 등의 충분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⑧ 법원의 승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는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의 모니터 자문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2)캘리포니아 예산 삭감 중지명령 사건(V.L., et al. v. John A. Wagner, Director of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ervices, et al.)⁹⁾

오클랜드에 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Claudia Wilken 판사는 2009년 10월 19일 캘리포니아주가 11월 1일 약 130,000명에 이르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온 주거 내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한 조치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주 정부의 예산삭감안은 명백한 필요에 의해서 하

9)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pai-ca.org/advocacy/V.L.-v-Wagner/index.htm>

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서비스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및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을 잃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판사는 서비스 이용자와 원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주거내 지원서비스 예산 삭감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사는 복지서비스를 삭감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예산안이 연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약 40,000명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들이 주거내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90,000여명이 세탁 및 청소지원, 음식 구매 및 식사준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Melinda Bird 상담실장은 "우리는 주 정부의 예산 집행 및 입법으로 승인된 중요한 서비스가 독단적으로 철회됨으로써 끔찍한 불행이 생겼고, 법원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법률센터에서 일하는 Paula Pearlman은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노인들에게 중요한 날이다. 요양원이나 다른 시설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지 않고 그들의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법원에서 재차 확인하였다."고 기뻐하였다.

국회의원 박은수 <http://blog.daum.net/parkeunsoo>
전화 02-784-4168 / 전송 02-788-322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http://www.ddask.net>
전화 02-732-3420 / 전송 6008-5115

탈시설정책위원회 <http://cafe.daum.net/deinstitution>
전화 02-794-0395 / 전송 6008-5812